

네델란드신문평의회

I. 네델란드 언론현황

네델란드는 95 개의 일간지와, 654 개의 정기신문, 신문을 제외한 384 개의 정기간행물이 발행되고 있다. 또 10 개의 라디오방송국과 2 개의 TV 방송국이 있으며, 알게멘 네델란드 페르스뷰로 (Algemeen Nederlands Persbureau: ANP)라는 통신사가 있다. ANP 는 신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비영리단체로서 네델란드의 모든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급한다. 또한 일간지를 제외한 정기신문, 방송국, 행정기관과 산업체에도 정보를 공급한다. 세계 제 2 차 대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신문이 석간이었으나, 대전 이후 전국지가 조간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총 발행부수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지는 여전히 석간인 경우가 많다. 네델란드의 신문은 총 발행부수의 95% 이상이 정기에약구독이기 때문에 센세이셔널하고 화려한 지면보다는 품위 있고 청결한 지면으로 구성된 신문이 많다. 또 대부분의 신문은 강한 정치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파성을 지면에 나타내는 것을 서슴치 않으나 정당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II. 신문평의회 설립 및 구성

네델란드 신문평의회는 기자연맹에 의하여, 1959 년에 설립되었으며, 저널리즘 활동에 대한심의를 한다. 기자연맹이 해체된 이후에는 기자협회가 평의회를 이끌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5 명의 위원과 5 명 이상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즉 법조 출신의 의장과, 1 명의 부의장, 기자 출신의 위원 2 명과 대리위원 2 명, 비기자 출신의 위원 2 명과 대리위원 2 명으로 구성된다. 신문발행인협회, 방송협회 그리고 출판협회는 각각 2 명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고 4 명의 비 언론계 출신위원은 사법부와 학계에서 선임 한다.

위원들은 모두 비상임으로 매월 1 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신문기사 및 방송보도에 대해 독자나 시청자로부터 불만호소가 접수되면 수시로 모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정보도 여부에 대하여 유권적 판정을 내린다. 신문평의회는 자율기관으로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불만호소가 접수되면 성문화되거나 또는 비성문화된 저널리스트의 직업통념을 바탕으로 기자의 활동이나 행동이 저널리스트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는가를 심의한다. 평의회가 다루는 기사는 법원에서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저널리즘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으로서, 그 판정은 언론기관의 활동을 규제할 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언론기관은 평의회의 판정이나 정정보도 요구를 무시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언론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자율기구이기에 예외 없이 언론기관은 평의회 결정에 따르고 있다.

III. 평의회 심의절차

불만호소인 이 불만호소를 평의회에 직접 서류로 제출하면 심의대상이 된다. 불만호소가 그것과 무관한 사람에게 제기되어, 조사없이 신청이 부적당함을 판정해야 할 경우나, 불만호소가 분명한 근거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아 기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평의회에 회부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은 불만호소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한다. 사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장은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을 미리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증인이나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은 사전조사나 심의기간 동안 네델란드에 개업중인법률고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장은 불만호소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평의회에 넘긴다.

평의회는 의장과 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평의회는 종결 회의에서 심의 결정하며 다수결로 판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제출된 불만호소가 취하되거나, 피불만호소 인으로 인하여 언론의 위신이 손상된다 하여도, 의장이 언론에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는 계속된다.

평의회는 불만호소에 대한 판정내용을 신문이 가급적 널리 공시하도록 하며,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판정의 전이면 공시금지 또는 부분공시를 결의한다.

피불만호소인이 사전조사를 거부하거나 평의회가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불만호소를 평의회에 넘긴다. 평의회는 비공개로 심의와 판정을 한다. 그러나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적거나, 피불만호소인의 이익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평의회는 그 판정의 발표를 유보할 수 있다. 발표를 유보할 경우 피불만호소인의 거부나 불만호소에 대한 심의협조사항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평의회 소환에 피불만호소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평의회는 「거부」로 인정하며 이는 불만호소에 대한 판정이 된다.

언론인 상호간의 사건이나, 한 언론인의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사실이나 사건에 관련된 분쟁은 그 당사자 일방이 쌍방향의로 서명된 분사조정요구서를 평의회에 제출하면 심의에

회부된다. 의장은 분쟁사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며, 평의회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평의회에 넘긴다. 평의회는 분쟁판정의 공개가 언론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허용을 결의한다.

IV. 신문평의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1. 네델란드 기자연맹은 신문활동에 대한 심의를 위해 평의회를 구성, 이를 신문평의회라 한다. 동 연맹의 해체 이후는 합법적으로 이를 계승한 네델란드 기자협회가 이끈다.

2. 신문평의회는 불만호소가 접수되면 기자의 활동이나 행동이 네델란드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를 심의한다. 신문평의회는 성문화된 또는 비성문화된 언론인 직업통념을 바탕으로 심의 한다. 신문평의회는 그 밖에 본 정관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 한다.

제 2 조

1. 동 정관에서 「기자」라 함은

① 네델란드 기자협회의 정회원과 준회원.

② ①항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기자협회 정신에 비추어 기자로 간주되는 사람과 그 밖의 주필이나 편집인 또는 출판기업법인 소유자 등 기자협회 정관 제 4 조에 규정된 언론기관의 편집주간급의 사람을 말한다.

2. 기타 본 정관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NVJ (Nieder Vndische Voreinigungvon Journalisten)은 네델란드 기자협회를 뜻한다.

② 불만 호소인 이라 함은 신문평의회에 불만호소를 한 자를 말한다.

③ 피불만 호소인은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신문평의회에 관계된 NVJ 정관 규정은 제 1 조 1 항의 기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정관개정은 신문평의회가 참여한 NVJ 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2 장 신문평의회

제 4 조-신문평의회는 5 명의 위원과 5 명 이상의 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즉 법조 출신의 의장과 1 명의 부의장, 기자 출신의 위원 2 명과 대리위원 2 명, 비기자 출신의 위원 2 명과 대리위원 2 명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1. 신문평의회 위원은 제 12 조에 따라 3 년마다 선출되며 재선이 허용된다.

2. 위원이나 대리위원이 임기전 사퇴 할 경우, 보선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운다.

3. 신문평의회 위원 또는 대리위원은 제 11 조에 규정된 직능단체 대표나 기자협회 총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 6 조-네델란드 기자협회 회원인 신문평의회 위원 또는 대리위원은 신문평의회에서 그의 행위가 네델란드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정하면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7 조

1. 불만호소의 심의와 이에 따른 표결에는 5 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5 명의 위원 중 의장 또는 의장대리가 결정되며, 가능하면 2 명의 위원은 네델란드 기자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 해야 한다.

2. 의장은 불만호소를 심의하기 위한 평의회구성을 결정한다. 기타 위원은 평의회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평의회는 불만호소를 심의하고 표결할 때 그 구성은 동일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불만호소를 처음부터 다시 심의한다.
4. 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부의장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평의회가잠정적 대행자를 선출하여 그 임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 8 조-신문평의회 사무국장과 부국장은 제 13 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조인으로 임명한다.

제 9 조

1. 신문평의회 위원, 사무국원, 대리위원들은 법규를 준수하며, 심의대상이 된 불만호소건에 대한 기밀준수를 요구한 제 22 조와 제 31 조를 엄수한다.
2. 신문평의회 위원, 사무국원, 대리위원은 접수된 불만호소건에 대해 불만호소인, 피불만호소인 또는 양측 변호사나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특히 맞불만호소인 경우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증서나 충고를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신문평의회 위원은 네델란드 기자협회가 부담하는 여비와 체제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직능대표회의

제 11 조

1. 신문평의회는 직능단체 대표회의를 둔다. 직능단체 대표회의는 신문평의회 의장, 네델란드 일간신문 발행인협회 회장, 네델란드 잡지협회 회장, 네델란드 신문협회 회장, 기자협회 회장 및 제 1 부회장, 제 2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신문평의회 의장이 그 의장직을 수행한다. 직능대표단회의는 사무국을 두어 운영한다.
2. 직능대표단회의는 네델란드 기자협회 총무이사 추천에 따라 신문평의회 위원과 대리위원을 임명하며, 제 13 조에 의거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3. 직능대표단 회의는 다수결로 한다. 4. 직능대표단회의 회원이나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취급된 안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제 12 조

1. 네델란드 기자협회 총무이사는 제 5 조 1 항에 따라 늦어도 회기 만료 2 개월 전에 신문평의회위원과 대리위원 후보를 직능대표단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과 대리위원 후보명단은 각각 최소한 5 명이어야 하며 우선 순위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 4 조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2. 결원이 생겼을 경우 앞 장의 규정에 따라 보선된다.

제 13 조

1. 직능대표단회의는 특별히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없는 한 네델란드 기자협회 사무국장을 신문평의회 사무국장에 임명한다.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의장과 상의한다. 2. 1 항에 따른 사무국장 또는 부국장급의 임명은 제 12 조의 정신에 따라 네델란드 기자협회총무이사의 추천을 거치며 최소한 2 명의 이름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 4 장 불만호소

제 14 조

1. 제 16 조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불만호소 중 불만호소인 이 직접 서류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면 평의회가 판단하여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불만호소신청서에는 일부 기재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불만호소 신청서에는 불만호소인의 이름과 주소, 불만호소의 내용과 근거, 관련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 14 조 1 항의 심의대상에서 빠졌을 경우의 중요성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한다.

4. 피불만호소인이 신문평의회 회원이 아닌 경우 불만호소인에게 25 길더의 기탁금을 영치시키게 한다. 평의회가 불만호소를 지지했을 경우기탁금은 반납된다. 불만호소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기탁금은 평의회의 비용에 충당된다.

제 15 조

1. 사무국장은 불만호소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접수인을 날인해야 하며 그 중 1 부는 의장에게 제출한다.
2. 불만호소신청서가 제 14 조 2,3 항의 요건에 미비되었을 경우, 불만호소인이 이를 시인하면 의장이 신청상의 결함을 지적해주고 일정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권고한다.
3.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혹은 보완되지 않은 불만호소신청서, 제 14 조 4 항 요건에 미비된 서류는 평의회가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

제 16 조

1. 네델란드 기자협회 이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의회에 회부하여 언론인의 활동이나 태도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
2. 신청서 제출과 처리는 제 14 조와 제 37 조의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불만호소 처리

제 17 조

1. 의장은 심의대상이 된 불만호소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한다. 조사는 불만호소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이나 상황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의장은 제 19 조 1,2 항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평의회에 회부한다. 2. 의장은 사전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

- ①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을 미리 소환하여 심문한다. 이 경우 신청서 사본 1 부가 사전에 피불만호소인에게 송부된다.
- ② 증인 이 나 전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동일한 목적이라면 직접 출두하거나 일정기일 내에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3. 신청서를 근거로 판단하여, 제 17 조 2 항 ①의 권한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경우, 의장은 피불만호소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발송, 일정기간 내에 사본 20 부의 반론을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사무국장은 반론서류의 부수 전체에 대한 접수를 날인해야 하며, 사본 1 부는 의장에게 제출한다.

4. 의장은 제 17 조 2 항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반론서류 1 부를 불만호소인에게 송부하여 일정기간 내에 반론서류에 의거 보다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5.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 항에 따라 불만호소인이 서류로 제출한 구체적인 사유서 사본을 피불만호소인에게 송부하여 일정기간 내에 보다 구체적인 사유서를 필요한 만큼 제출하게 한다. 피 불만호소인의 사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판정이 났다 해도 피불만호소인은 상기불만호소인의 사유서 접수 1 주일 내에 사유서에 대한 소견진술을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만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의장은 피불만호소인의 사유서나 소견진술서 사본을 불만호소인에게 송부한다.

6. 의장을 보필하는 서기국은 사전조사에서 회의록을 작성 한다.

제 18 조

1. 의장은 불만호소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평의회에 넘긴다.

2. 사무국장은 불만호소에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청서와 반론서 그리고 기타 기록서류 사본을 전달한다.

제 19 조

1. 불만호소가 무관한 사람에게 제기되었음이 판명되면 평의회는 더 이상의 조사없이 신청을 기각한다.

2. 불만호소가 분명한 근거가 없거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평의회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기각할 수 있다.

3. 의 장이 서류상의 방법에 의한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 한 평의회는 1,2 항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불만호소인도, 피불만호소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더 이상의 조사가 불필요하거나, 그와 같은 사건종결이 합목적이라고 판단되면 평의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판정으로 불만호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그 판정을 지체 없이 통고한다. 통고 대상은 피불만호소인, 불만호소인, 네델란드 기자협회이사, 제 11 조의 직능대표단등이다 6. 평의회는 의장이 사전조사 없이 불만호소를 평의회에 회부했을 경우 사전조사를 의장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 20 조

1. 평의회는 제 19 조 1,2,4 항 및 6 항의 판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별회의를 통해 다를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을 심의회에 소환하면서 평의회 구성을 알린다.
3.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은 사전조사나 심의기간 동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델란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의 변호사는 심의 3 일전 평의회 의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이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는 심의 3 일전 이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이 한쪽 또는 쌍방 당사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으면 위임은 허용된다.
4. 피불만호소인과 그의 변호사는 심의전에 사무국장을 통해 기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 21 조

1.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부권이 있다.

① 불만호소에 관계된 평의회 위원.

②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의 재종간의 혈족 또는 인척이 되는 평의회 위원이나 불만호소인 또는 피불만호소인과 동일한 또는 협력관계의 매체에 근무하는 평의회 위원.

③ 불만호소인 또는 피불만호소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의회 위원.

2. 거부당한 위원은 가급적 조속히 다른 위원으로 보완한다.

3. 가부등수의 표결인 경우는 기각된 것으로 한다.

제 22 조 평의회는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23 조

1. 의장은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의 신청 없이도 증인이나 전문가를 소환할 수 있다.
2.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은 그 스스로 증인으로 나설 수 있고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이름과 주소는 심의 3 일전에 의장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 24 조

1.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2. 의장은 심의 중에 나타난 상이한 의견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제 25 조

1.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은 심의에 등장하는 증인과 전문가의 이름을 미리 의장에게 통고한다.
2. 심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전문가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3. 의장은 공정하게 심문의 순서를 정한다. 의 장의 중재로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은 직무상 거부된 질문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4. 의장은 증인에게 네델란드 기자협회가 부담하는 적정선의 여비와 체재비를 지불한다.

제 26 조

1. 의장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을 심문한다. 질문은 의장이나 위원을 통해 제기한다.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은 의장을 통해 반대질문을 할 수 있다. 평의회는 상대진영의 요구나 직무상 질문을 거부할 수 있다.

2.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의 법률고문은 1 항의 규정에 제한 받지 않고 자신들이 제기한 불만호소에 대해 해명할 권리를 갖는다. 의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보다 정확한 심의를 위해 불만호소인이나 그의 법률고문은 3 항에 따라 피불만호소인의 해명에 대해 2 차 발언을 할 수

있다.

3. 피불만호소인이나 그의 법률고문은 1 항의 규정에 제한 받지 않고 어느 경우에도 자유롭게 불만호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피불만호소인이나 그의 법률고문은 발언뿐만 아니라 2 차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 불만호소인이나 그의 법률고문은 2 항의 규정에 따라 2 차 발언을 했을 경우 피불만호소인이나 그의 법률고문은 구체적으로 구두로 변호할 기회를 갖는다. 피불만호소인이나 그의 법률고문은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4. 의장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제 24 조, 제 25 조 3 항, 제 26 조 3 항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불만호소인과 피 불만호소인 또는 그들이 법률고문에게 특정기간을 연기해 줄 수 있다.

제 27 조-의장은 직무상 또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의 요청으로 심의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 28 조 -사무국장은 심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불만호소인과 피불만호소인, 중인, 전문가 등의 진술내용이 공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사무국장과 의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 29 조

1. 평의회는 최종회의에서 심의를 결정하며 판정이유를 제시한다. 이 경우 오직 심의에 제기된 사실과 피 불만호소인 및 법률고문의 열람이 가능했던 문건만을 다룬다.

2. 평의회는 다수결로 판정한다. 사무국장은 심의권을 갖는다.

제 30 조

1. 평의회가 정당한 근거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결의했을 경우 3 주일 후 심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며 최종판결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 ① 불만호소인, 피 불만호소인 및 그들 법률고문의 이름과 주소.
- ② 불만호소에 대해 조사된 사실과 상황.
- ③ 판정 이유.
- ④ 불만호소를 다룬 의장과 위원 및 사무국장의 이름
- ⑤ 의장과 사무국장의 임명.

제 6 장 권석시 불만호소 심의

제 34 조 -의장은 피불만호소인이 사전조사 협조를 거부하거나 답변서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만호소를 평의회에 넘긴다.

제 35 조

1. 평의회는 피불만호소인이 제 20 조 2 항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여기에 적시된 전권 대행자도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 「거부」로 인정한다.
2. 이 경우 제 21 조-제 29 조, 제 33 조가 적용된다. 즉 제 23 조, 25 조 3 항 제 26 조, 27 조 및 제 29 조 1 항이 불만호소인, 피 불만호소인, 법률고문, 증인과 전문가가 관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36 조

1. 평의회는 심의회와 판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2. 평의회는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피불만호소인의 이익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불만호소에 대한 소견의 발표를 유보할 수 있다.
3. 2 항의 경우, 평의회는 피불만호소인의 거부나 불만호소에 대한 심의협조사항을 신문에

게재하게 할 수 있다.

제 37 조-평의회의 거부인정은 불만호소에 대한 판정이며 제 30 조~제 32 조에는 제 30 조와 거부사실이 서술된다.

제 7 장 언론인간의 불만호소

제 38 조

1. 언론인 상호간의 사건이나 한 언론인의 직업적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관련된 분쟁은 쌍방 합의 하에 평의회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1 항의 분쟁에는 그것이 노동조건에 관련되는 한 저널리스트와 일간신문이나 잡지 발행인 또는 언론사 간부간의 싸움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 39 조

1. 제 38 조의 분쟁은 분쟁당사자 어느 일방이 쌍방합의로 서명된 20 부의 분쟁조정요구서 사본을 평의회 사무국장에 제출하면 심의에 회부된다.

2. 사무국장은 모든 요구서 사본에 접수날인을 하여 그 중 1 부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3. 의장은 요구서에 의거 사전조사를 지시한다.

4. 의장은 사전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의장은 개인적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싸움을 적법하게 조정하는데 노력한다.

②의장은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들에게 각 기의 입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진술서 사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를 제출하게 한다. 5. 의장은 분쟁심의회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전조사를 중단하고 심의를 평의회에 넘긴다.

제 40 조-분쟁심의에 대한 평의회 구성은 불만호소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다.

제 41 조-공개로 진행 된 분쟁 심의와 판정심의에서는 제 21 조~제 32 조가 적용된다.
제 31 조는 제외된다.

제 42 조-평의회 는 분쟁판정의 공개가 언론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허용을 결의한다.

제 8 장 신문을 위한 평의회 자문

제 43 조 -평의회는 네델란드 기자협회 이사가 제기한 언론인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자문한다.

1. 이 정관은 1959 년 11 월 7 일 네델란드 기자연맹의 연맹평의회에 의해 확정되었고 1960 년 9 월 22 일 등 평의회에 의해 가결되었으며 1969 년 네델란드 기자협회에 의해 수정되었다.